

신규 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업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제과점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세금 문제이다.

이에 제과점이 내야 할 부가가치세 세금의 신고 요령과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소득세란?

지난해 1년간의 총 수입 금액에서 비용과 각종 공제 사항 등을 제외한 소득의 일부를 다음해 5월에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신고 내용 및 기간

- 신고 내용 : 지난해 1월~ 12월까지의 소득
- 신고 및 납부 기간 : 5월 1일부터 31일까지(주거지 관할 세무서)

신고 구비 서류

● 간이 소득 금액 계산서 제출자

- ①소득세 신고 상황표
- ②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
- ③소득 공제사항 명세표
- ④간이소득금액 계산서

● 제무 표표 등 제출 대상자

- ①소득세 신고 상황표
- ②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
- ③소득 공제 사항 명세표
- ④소득 금액 조정 계산표
- ⑤조정 계산서
- ⑥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부속 서류
- ⑦합계 잔액 시산표

중간 예납 제도란?

연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번에 낼 경우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난 한해 동안에 부담한 소득 세액을 기준으로 1/2 가량의 세액을 12월에 미리 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해 5월 소득 세 확정 신고 때에는 미리 낸 중간 예납 세액을 공제해 납부하거나 세금을 다 낸 후 미리 낸 중간 예납 세액만큼을 환급받게 돼 있다.

신고 및 납부 방법

①자진 신고의 경우

연 매출이 4,800만원~1억 5천만원 이하 또는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에 해당될 때 본인 또는 세무사 등을 통해 신고할 때는 신고서류를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5월 31일 이내에 신고서류를 우편 발송하면 된다. 해당 세금은 자진 납부서를 작성해 세금과 함께 5월 31일까지 은행 등에 납부하면 된다.

* 신고와 세금 납부 때 필요한 신고 서류는 세무서 부근의 문방구에서 살

수 있다.

②과세특례자의 경우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과세특례자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세무서에서 사전에 전산으로 계산한 신고서를 보내준다. 사업자는 신고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서명 날인하여 5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우송하고 세금은 세무서에서 보내준 자진 납부서와 함께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 그러나 5월 중순까지 세무서의 신고서 발송 누락 또는 우편물 손실 등으로 신고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가 있으면 사업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

사업 소득세 계산 방법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인 과세특례자는 소득세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세무서에서 발송한 세금대로 세금을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간 4,800만원 이상인 매출 사업자는 자신 또는 세무사를 통해 소득세를 계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자진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 중 연 매출 4,800만원~ 1억 5천만원 이하 사업자와 1억 5천만원 이상 자는 소득세 계산 방법이 약간 다르므로 아래의 ‘장부를 쓰지 않는 경우’와 ‘장부를 쓰는 경우’를 참고하면 된다.

①장부를 쓰지 않는 경우

연간 소득이 4,800만원~ 1억 5,000만원 이하로 매출 내역, 소득을 올리는 데 들어간 필요 경비 등을 기입한 장부 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업소의 경우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연간 매출액에 정부에서 제시한 표준 소득률을 곱해 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아래 방식처럼 계산해 세금을 내는 형식이다.

연간 매출×표준 소득률=소득 금액- 소득 공제=과세 표준액× 해당 과세 표준액의 세율-과세표준의 누진 공제액=산출 세액-이미 납부한 세액(중간 예납을 했을 경우)=내야 할 세금액

②장부를 쓰는 경우

매출 내역, 소득을 올리는 데 들어간 필요 경비(재료비, 인건비 등)를 기입한 장부를 쓰고 연간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아래처럼 계산해 세금을 내는 형식이다. 1억 5,000만원 이상 매출 점포는 반드시 장부를 쓰도록 돼 있다.

연간 매출-필요 경비=소득 금액-소득 공제=과세 표준액×해

당 과세 표준액의 세율 - 과세 표준의 누진 공제액 = 산출 세액 - 이미 납부한 세액(중간 예납을 했을 경우) = 내야 할 세금액

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사항

표준 소득률(장부를 쓰지 않는 점포만 해당)

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 수입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야 한다. 즉 자기 점포가 자영제과점인지 아니면 체인점인지, 자기 건물에서 영업하는지 아니면 임대 형식으로 영업하는지를 살펴 이에 맞는 표준소득률을 적용해 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된다. 단 총 수입 금액에서 아래의 해당 기본률을 곱해 나온 소득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며 5년 이상 동일 시·군·구에서 영업하고 있는 점포는 차등률을 적용해 세금을 적게 내도록 혜택을 주므로 제과점들은 우선 자신의 점포가 차등률이 적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지역 제과점

- 기본율 - 자기 건물에서 영업 점포: 24.9%, 임대로 영업 점포: 19.2%
- 차등률 - 자기 건물에서 영업 점포: 19.9%, 임대로 영업 점포: 15.3%

● 체인 제과점

- 기본율 - 자기 건물에서 영업 점포: 19.2%, 임대로 영업 점포: 14.8%
- 차등률 - 자기 건물에서 영업 점포: 15.3%, 임대로 영업 점포: 11.8%

차등률이란?

총 수입 금액에서 자기 점포에 해당되는 위의 기본율을 곱해 나온 소득 금액이 2,000만원이며 동일한 장소에서 5년 이상 영업한 자는 표준 소득률 중 차등률을 적용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혜택이 있다. 한편 동일 장소에서의 영업과 관련해 도시 계획, 임대 계약이 끝나 점포의 위치가 변동된 경우라도 동일한 시·군·구 내에서 동일 상호로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총 수입금액 × 해당 기본율 = 2,000만원 이하인 점포는 다시 총 수입 금액에 아래의 해당 표준 차등률을 곱해 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앞서 제시된 소득세 계산 공식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면 된다.

소득 공제

기초 공제 100만원, 배우자 100만원, 부양가족(20세 미만일 경우) 1인당 100만원, 장애자(해당자 있을 경우) 1인당 50만원, 경로 우대(65세 이상 해당자 있을 경우) 1인당 50만원, 여자 세대주 40만원

필요 경비(장부를 쓰는 점포만 해당)

- 원가 : 재료비, 차량비, 광고비, 통신비, 접대비 등
- 인건비 : 급료, 수당, 숙식비, 퇴직금, 복리 후생비 등
- 사업용 경비 : 임대료,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
- 세금 공과비 :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재산세, 주민세, 협회비 등

세금 계산의 예

어떤 제과점의 연간 매출이 1억원(1일 매출 28만원 기준)이어서 '장부를 쓰지 않는 점포'에 해당한다. 또 자영 제과점이며 장소는 임대 형식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6년간 영업하고 있다. 기초 공제 100만원 외에 배우자 100만원, 20세 이하의 부양 가족이 2명 있어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 등 총 소득 공제액이 400만원이다. 지난해 12월에 중간 예납제를 이용해 미리 60만원의 세금을 낸 적이 있을 때 올해 5월에 내야 할 지난해의 소득세는?

계산에 앞서 알아야 할 점

소득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며 동일 지역에서 5년 이상인 점포는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으므로 이를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계산해 보니 점포는 1억원 × 19.2%(소득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지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자영제과점 임대 영업의 '기준율'로 계산하므로 19.2%임) = 1,920만원이 소득 금액이며 또 5년 이상 동일 지역에서 영업해 위에 제시된 '차등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점포는 자영 제과점이며 임대 형식으로 영업하고 있으므로 위의 '차등률'에서 찾은 표준 소득률은 15.3%이다. 따라서 이 점포의 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다.

연 매출 1억원 × 표준 소득률 중 차등률 15.3% = 소득 금액 1,530만원 - 소득공제액 400만원 = 과세 표준 1,130만원이다. 과세 표준 1,130만원은 위의 '과세 표준 및 세율'에 의하면 1,000만원~4,000만원 이하에 해당되며 이에 따른 세율은 20%, 누진 공제액은 100만원이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따라서 과세표준 1,130만원 × 세율 20% - 누진공제액 100만원 = 산출세액 126만원이 된다. 지난해 12월에 중간 예납한 세금이 60만원이므로 올 5월 내야 할 지난해의 소득세는 산출 세액 126만원 - 중간 예납액 60만원 = 66만원이다.

신고 불성실 때 가산세

신고를 않거나 불성실하게 할 때는 소득 공제, 세액 공제와 각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신고 불성실 때에는 미달 세액의 20%, 납부 불성실 때에는 미납부 세액 1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5]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	없음
1천만원~4천만원	과세표준액의 20%	1백만원
4천만원~8천만원	과세표준액의 30%	5백만원
8천만원 이상	과세표준액의 40%	1천3백만원